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-1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 사유

구민상 대상자가 없거나 공적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합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표창하고,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가. 구민상의 시상부문을 문화상, 체육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·선행상, 봉사상, 지역발전상의 6개 부문으로 변경

현 행	개 정 안
용감한 구민상	체육상
효행상	효행·선행상
모범청소년상	지역발전상

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## 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(표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기타 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4. 1. 16. ~ 2014. 2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동의

다.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4. 2. 11.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사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마포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, “조례등”을 “조례 등”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구정”을 “표창은 구정”으로,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개인 및 기관단체와 그 임·직원”을 “개인, 기관 및 단체와 그 임직원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마포구 구민상(이하 “구민상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민상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의해”를 “따라”로, “있는자”를 “있는 자”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추진실적등”을 “추진실적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현저한 자”를 “현저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임·직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살기좋은 내고장”을 “살기 좋은 내 고장”으로, “3년 이상”을 “3년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예외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문화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상, 봉사상, 모범청소년상의 6개부문”을 “문화상, 체육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·선행상, 봉사상, 지역발전상의 6개 부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표창방법 및 시상금등)”을 “(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”를 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, “기타 부상”을 “그 밖의 부상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공적심사위원회”를 “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공적심사”를 “공적심의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구성 운영”을 “구성·운영”으로, “공적심사위원회를”을 “위원회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, “10인”을 “1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결 할”을 “의결할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등으로부터”를 “등으로부터”로, “기 수립”을 “이미 수립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조례에 의한”을 “조례에 따른”으로, “구민에 대하여는”을 “구민에게는”으로, “행사등”을 “행사 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표창사실확인)”을 “(표창사실 확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받은자”를 “받은 자”로, “패를”을 “상패를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제5조(표창권자) 이 조례에 의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자(이하 “표창권자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6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(생략)
2.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구 소속 기관
3.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
4. 5. (생략)
6.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와 그 임·직원

제9조(구민상) 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

제5조(표창권자) ----- 따라  
----- 있는 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6조(표창장)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추진 실적 등-----  
-----
3. -----  
----- 현저한 사람
4. 5. (현행과 같음)
6. -----  
-----  
----- 임직원

제9조(구민상) ① -----  
-----  
----- 살기 좋은 내 고장 -----  
-----

준으로 3년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상, 봉사상, 모범청소년상의 6개부문으로 한다.

③ 구민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

제10조(표창방법 및 시상금등) ① 표창장,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

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을 지급하거나,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,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기장 또는 배지, 메달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등이 아닌 수상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하지 아니한다.

----- 3년 이상

----- 예외로 한다.

② ----- 문화상, 체육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·선행상, 봉사상, 지역발전상의 6개 부문-----.

③ ----- 시행에 -----

제10조(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) ① -----  
--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.

② ----- 범위

----- 그 밖의 부상-----

제13조(공적심의) ① 표창은 공적  
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  
권자가 결정한다. 다만, 상장, 감  
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  
략한다.

② (생략)

제14조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 
구성)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  
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 
시 마포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 
“위원회”라한다)를 구성 운영하  
되, 심사대상자에 따라 구민과  
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 
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  
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5인  
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구  
의 국장 또는 담당관·과장급  
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  
다.

③·④ (생략)

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 
으로 의결 할 수 있다.

제13조(공적심의) ① ----- 제14  
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

공적심의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 
구성) ① -----

구성·운영

위원회를

② 위원회

5명

10명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

의결할

제15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부  
서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 
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 
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 
한다.

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 
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  
원이 소속된 부서장 등은 그 공  
적사항을 조사한 후, 그 공적이  
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 
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 
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사회적능단체, 공익단체 등  
으로 부터 소속회원에 대하여  
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  
문별 해당부서장 등은 그 공적  
사항을 조사한 후, 기 수립한 부  
문별 표창계획 인원의 범위 안  
에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  
해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  
으며,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 
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  
다.

제17조(표창자 사후관리) ① 이

제15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--

따른

②

제1항에 따른

③

등으로부터

이미 수립

범위

제1항에 따른

제17조(표창자 사후관리) ① ---

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구민  
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행사  
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  
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② (생략)

제18조(표창사실확인) 표창을 받  
은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 
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 
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
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  
고,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  
부한다.

조례에 따른 ----- 구  
민에게는 ----- 행사  
등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표창사실 확인) -----  
받은 자-----  
----- 상패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9조(구민상) ① 생략

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상, 체육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·선행상, 봉사상, 지역발전상의 6개 부문으로 한다.

③ 생략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미만인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현행 조례에 따른 구민상 부문의 종류만 변경하고, 전체 수(6개 부문)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많지 않음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박준경
연락처	02-3153-8215

[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 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구민상) 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<u>살기좋은 내고장</u>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<u>3년 이상</u>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<u>문화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상, 봉사상, 모범청소년상의 6개부문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구민상의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</p>	<p>제9조(구민상) ① ----- ----- <u>살기 좋은 내 고장</u> ----- ----- <u>3년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외로 한다.</u> -----</p> <p>② ----- <u>문화상, 체육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·선행상, 봉사상, 지역발전상의 6개 부문</u>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</p>	<p>제9조(구민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체육상, 용감한 구민상</u> ----- ----- <u>7개 부문</u> ----- -----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